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11577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균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명근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윤식

변론 종결2024. 11. 12.

판결 선고2024. 11. 2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2,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22. 6. 10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54,882,1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0. 7. 13. C과 사이에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, 천안시 서북구 D 공장용지 2,523㎡, E 공장용지 2,510㎡(이하 '이 사건 공장용지'라 한다)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,280,000,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

나.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2022. 1. 6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,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2022. 6. 30.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피고는 2022. 6. 10. C, G과 사이에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,000,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22. 6. 30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원고는 2022. 8. 11.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66116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2023. 12. 8. 수원지방법원 2023머86277호 조정 절차에서 'C은 원고에게 2024. 2. 29.까지 150,000,000원을 지급하되,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'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 내지 4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명의의 1/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54,882,1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

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(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).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).

원고는, C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계약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나,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.

나.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

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,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,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·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).

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, 위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인 C에게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 또는 대출금 등 다른 채무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,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,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C에게 무자력이 초래되거나 그 무자력의 정도가 심화되었는지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·입증을 다하고 있지 않다.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장영채

별지